

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민경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6.

발의자 : 민경욱 · 홍문종 · 이종배

김도읍 · 성일종 · 김현아

김정재 · 이은권 · 정갑윤

문진국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·감독 또한 느슨해지는 등 민관유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,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공직자윤리법」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,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, 민관유착 방지의

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).

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,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3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,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 고자 하는 사람	----- 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